

경운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경운대학교 교과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위원은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 및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변동이 있을 경우 총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,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, 교육과정의 운영과 방향설정
2. 학점당 수업 기간관리, 학생출결관리, 휴·보강관리의 등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학부(과) 교육과정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 산하에 각 학부(과)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학부(과)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부(과)장이 위원장이 되며, 학부(과) 교육과정을 심의할 수 있다.

③ 학부(과)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된 교육과정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 산하에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는 학부장이 위원장이 되며, 교양 교육과정을 심의할 수 있다.

③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된 교육과정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